

관리번호 ()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하반기()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반기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연도 다음해 9월 정산을 하게 되며, 정산시 이미 지급받은 근로장려금과 비교하여 추가로 지급 또는 초과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② 가구원, ④ 전세금 명세, 2쪽 ⑤ 상반기 총급여액 등, ⑥ 하반기 총급여액 등 작성란을 초과할 경우 3쪽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I·II)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① 신청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휴대전화		⑤ 유선전화		⑥ 전자우편

*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부속명세서 ② 가구원란에 적습니다)

② 가구원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③ 신청자격	Q1.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 . 이전 출생) 부 또는 모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Q1-1. 반기 신청대상 귀속연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현재의 가구원 변동 사항(결혼, 이혼, 출산)이 있습니까? ※ 가구원 변동이 있는 경우 정산시 환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4쪽 ② 가구원 참조)		예 [] 아니오 []			
	Q2.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작성방법 4쪽 ⑥ 신청자격 Q2)		예 [] 아니오 []			
	<table border="1"> <tr> <td>단독가구(2천만원)</td> <td>홀벌이가구(3천만원)</td> <td>맞벌이가구(3천600만원)</td> </tr> </table> ※ 단독/홀벌이/맞벌이가구 구분은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 총급여액 등으로 판단합니다. ※ 총소득 기준은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총소득 기준입니다.	단독가구(2천만원)	홀벌이가구(3천만원)	맞벌이가구(3천600만원)		
단독가구(2천만원)	홀벌이가구(3천만원)	맞벌이가구(3천600만원)				
Q3.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②)이 소유한 토지·건물·주택·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까?		예 [] 아니오 []				
Q4. [Q3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입니까?		예 [] 아니오 []				

*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②)이 임차한 주택·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주택의 전세금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제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과 실제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④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재지	⑬ 종류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⑮ 월세	⑯ 무상임차 (체크시 3쪽 무상임차사실확인서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원	원	[]	
					[] []	원	원	[]		

⑤ 상반기 총급여액 등 (1월~6월)	구분	⑰ 소득자	⑱ 상호· 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⑳ 총 급여액 등	㉑ 해당기간 근무월수	㉒상용근로 중도퇴사 여부(0,×)	㉓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 ★ 상용근로 (㉑÷㉒) ×(㉑+6) ★ 중도퇴사, 일용근로 (㉑ × 2)	
	상용근로 []	신청자 [], 배우자 []			원	월			원
		신청자 [], 배우자 []			원	월			원
	일용근로 []	신청자 [], 배우자 []			원	-	-		원
		신청자 [], 배우자 []			원	-	-		원
㉔ 합 계 (부부합산 장려금 산정 대상 총급여액 등)								원	

⑥ 하반기 총급여액 등 (1월~12월)	구분	⑳ 소득자	㉖ 상호·단체명	㉗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㉘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				
	상용근로 []	신청자 [], 배우자 []							원
		신청자 [], 배우자 []							원
	일용근로 []	신청자 [], 배우자 []							원
		신청자 [], 배우자 []							원
㉙ 합 계 (부부합산 장려금 산정 대상 총급여액 등)								원	

⑦ 신청 금액 계산	구 분		근로장려금	
	⑳ 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근로장려금			원
	㉑ 지급 적용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2항)			35%
	㉒ 장려금 산정금액 (㉑ × ㉑)			원
	㉓ 감액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장려금 산정금액의 50%(㉒ × 50%)	원
㉔ 신청 금액 (㉒-㉓)	산정금액에서 감액 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⑧ 수령계좌 신고 ㉕ 금융회사 등 ㉖ 계좌번호

근로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신청(기재)한 수령계좌와 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신고서 등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좌가 신청(기재)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기재)한 계좌(복지계좌개설, 변경, 삭제 포함)를 통해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현금 신청) 또는 최종 복지계좌개설을 삭제 신고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등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 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수수료 없음
-------------------	--	-----------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I)

※ 1쪽 2 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7 관계, 8 성명, 9 주민등록번호, 7 관계, 8 성명, 9 주민등록번호. Rows for household members.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II)

※ 1쪽 4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Table for rental fee details with columns: 10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11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12 소재지, 13 종류 (주택, 상가등), 14 전세금 (임차보증금), 15 월세, 16 무상임차.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 제1쪽 16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Table for no-rent confirmation with columns: 임차인(세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종류 (주택, 상가등),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2쪽 5 상반기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Table for annual income details with columns: 구분, 17 소득자, 18 상호·단체명, 19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0 총급여액 등, 21 해당기간 근무월수, 22 상용근로 중도퇴사 여부(O,X), 23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 (상용근로 (20÷21)×(21+6), 중도퇴사, 일용근로 (20×2)).

※ 2쪽 6 하반기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Table for semi-annual income details with columns: 구분, 25 소득자, 26 상호·단체명, 27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8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

작성 방법

㉒ 가구원

※ (유의사항) 해당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현재 가구원 사항이 결혼, 이혼, 출산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과 해당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연도 다음해 근로장려금 정산시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구원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정산시 환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의 귀속연도 다음해 5월에 정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해당)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을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2. ㉓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㉓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Q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부양자녀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자녀
- 동거입양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2.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부부합산)은 아래 기준의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4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 6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총소득을 말합니다.

※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구분은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 총급여액 등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2천만원	3천만원	3천 600만원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다만, 동일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귀속연도)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귀속연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Q3. 근로장려금의 재산은 신청자와 ㉒ 가구원란에 적은 사람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토지·건물·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및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㉔ 전세금 명세

1. 신청자와 ㉒ 가구원란에 적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래 기준일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㉕ 상반기 총급여액 등, ㉖ 하반기 총급여액 등

1. ㉕ 상반기 근로소득의 "㉗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㉗은 해당 반기에 근무한 월수(5쪽 4 참조, 상용근로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6월로 간주하여 적지 않습니다)를 말하며, ㉘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은 ★ 표시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5쪽의 근로소득 [1) ~ 4)] 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㉙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작성 방법

1) 비과세소득, 2)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4)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 2. ㉞ 하반기 근로소득의 "㉞ (장려금 산정대상)총급여액 등"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상반기 총급여액 등과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3.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㉞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무월수를 적습니다
- 5. ㉞ 상용근로소득(「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자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해당) 귀속연도의 6월 30일 이전 퇴사한 경우에는 ○,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 로 표기합니다.

※ (사업소득 참고사항)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분류	업종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다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45%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75%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⑦ 신청금액 계산

- 1. ㉞ 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별표 11)에 따라 계산됩니다.
- 2. ㉞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주택·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장려금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의 금액 중에서 나목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일용근로소득 포함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로소득은 제외한다)만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하였을 경우 심사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0조의6제7항의 근로장려금을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 점을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에도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하반기 신청분 및 다음해 정산으로 추가 환급할 경우 ㉞의 환급계좌로 환급합니다. 다만, 환급받을 장려금을 부과통보 전까지 별도의 계좌를 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 한 경우와 다른 신청서에 신청(기재)한 환급계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기재)한 계좌(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 포함)를 통해 지급합니다.

- 4. 재산가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 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아래 기준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

- 6.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법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